

#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3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9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지정사항 변경(안 제2조)
- 협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상위법령 조문을 명문화(안 제3조)
-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포상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6조)
-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(안 제8조)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·보완

##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입법예고 : 의견없음

- 예고기간: 2012. 10. 12. ~ 11. 1.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
# **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**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단, 「민방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안산시 민방위협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로 통합·운영 한다.

-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안산시의회 의장
2.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
3.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4. 국가정보원 관계자
5.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
6. 안산단원경찰서장 · 안산상록경찰서장
7. 안산소방서장
8.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9. 안산시재향군인회 회장
10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1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업무 담당과장
2. 작전담당간사 : 육군제2506부대4대대 작전장교

### 3. 예비군담당간사 : 육군제2506부대4대대 동원장교

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방위대비책 :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
2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의 지원대책
  - 가.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·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
  - 나. 향토예비군 ·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· 계몽 및 지원대책
  - 다. 취약지역 대비책
  - 라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· 운용 및 지원대책
  - 가.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 - 나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 · 관 · 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
4. 안산시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
5.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에 관한 사항
6. 민방위사태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7.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 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5조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지역 예비군을 육성 · 지원 할 수 있다.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· 운영 및 유지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3.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4.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· 수송 · 통신 ·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 · 관 · 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군부대의 과장급 장교
2.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소속 기관의 과장급 각1명
3.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
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협의회에 부의 할 안전의 사전심의 및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2.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·조정
3.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참석수당)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법 제9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두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며, 지원본부장은 안산시 부시장이 된다.

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되며,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, 인력·재정동원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, 의료·구호, 보급·급식, 통신·전산, 홍보 분야로 구성되며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

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
⑤ 그 밖에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제9조(지원본부의 사무)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2.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

5.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 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 
 가. 향방작전간 관련된 급식·수송·의료·장비물자 및 전투지원  
   1) 수송 : 병력수송용, 무기·탄약 운반용, 급식지원용  
   2) 급식 : 상황 발생 시 협의회 예산 반영/심의, 지원본부 급식지원(전환급식  
     지원 포함 : 작전목적상 타 지역으로 전환되어 임무수행 시 해당 지역 지원  
     본부에서 급식지원)  
   3) 장비 및 물자 : 소요량을 지원본부에서 지원  
   4) 급수 : 지원본부 지원 제한 시, 공병대대 정수차량·급수 트레일러 등 운영 지원
6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 
 7.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 
 8.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    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위촉된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재난안전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재난안전과장 이 장 원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민방위담당 박 보 한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전 울 (행정 2166)

# 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 조 례	개 정 조 례 (안)	비 고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에 따른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「민방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안산시민방위협의회를 「통합방위법」 제7조에 따라 「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」로 통합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</b> ① 안산시 통합방위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,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산시의회 의장</li> <li>2.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</li> <li>3.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</li> <li>4. 국가정보원 관계자</li> <li>5. 안산단원경찰서장 · 안산상록경찰서장</li> <li>6. 안산소방서장</li> <li>7.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</li> <li>8.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 하는 검사</li> <li>9. 안산시재향군인회 회장</li> <li>10.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</li> </ul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 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산시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</b> ① 안산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 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단, 「민방 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안산시 민방위협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로 통합·운영 한다.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구성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산시의회 의장</li> <li>2.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 하는 검사</li> <li>3.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 목적 구체화</li> <li>○ 안산시 민방위협의회 통합사항 제2조 제1항 으로 이동</li> <li>○ 안산시 민방위협의회 통합사항 이동(제1항)</li> <li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(제2항~ 제5항)</li> </ul>
		-

현 행 조 례	개 정 조 례 (안)	비 고
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	<p>4. 국가정보원 관계자  5.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6. 안산단원경찰서장 · 안산상록경찰서장  7. 안산소방서장  8.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 9. 안산시재향군인회 회장  10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</p> <p>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1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 2. 작전담당간사 : 육군제2506부대4대대 작전장교  3. 예비군담당간사 : 육군제2506부대4대대 동원장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간사 지정사항 변경 (제6항)</li> </ul>
<p>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제3항제2호, 제3호,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 2.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가목, 나목 및 다목에 관한 사항  3.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통합방위대비책 :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2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의 지원대책  가.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·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 나. 향토예비군 ·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· 계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(상위법령 내용 포함)</li> <li>○ 심의사항에서 법 제5호 제3항제3호 삭제</li> </ul>

현 행 조 례	개 정 조 례 (안)	비 고
<p><u>제4조(간사·서기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무담당 간사 : 총무업무 담당과장</li> <li>2. 심리전담당 간사 : 홍보업무 담당과장</li> <li>3. 민방위담당 간사 : 민방위업무 담당과장</li> </ol> <p><u>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,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및 지원대책</u></p> <p><u>다. 취약지역 대비책</u></p> <p><u>라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</u></p> <p><u>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</u></p> <p><u>가.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안산시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6. 민방위사태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<u>7.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</p>	<p>○ 제2조 제6항으로 이동</p>

현 행 조 례	개 정 조 례 (안)	비 고
<p><b>제5조(회의)</b>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</p> <p>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<b>제4조(협의회 회의)</b>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②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</p>	<input type="radio"/>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<p><b>제6조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)</b>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지역 예비군을 육성·지원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</li> <li>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</li> <li>3.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</li> <li>4.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</li> <li>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, 그밖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	<p><b>제5조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)</b>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지역 예비군을 육성·지원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</li> <li>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</li> <li>3.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</li> <li>4.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</li> <li>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	<input type="radio"/>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<p><b>제7조(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</b> ①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</p>	<p><b>제6조(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</b>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</p>	<input type="radio"/>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현 행 조 례	개 정 조 례 (안)	비 고
<p>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군부 대의 과장급 장교</p> <p>2.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소속 기관의 과장급 각1명</p> <p>3.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협의회에 부의 할 안전의 사전심의 및 의장이 위임하는 안전의 심의</p> <p>2.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· 조정</p> <p>3. 포상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</p>	<p>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군부 대의 과장급 장교</p> <p>2.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소속 기관의 과장급 각1명</p> <p>3.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협의회에 부의 할 안전의 사전심의 및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</p> <p>2.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 조 · 조정</p> <p>3.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수정(제4항)</li> </ul>
<p>제8조(참석수당)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참석수당)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</li> </ul>
<p>제9조(통합방위지원본부) 「통합방위법」 제9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하여 안산시 통합방위지 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 립 · 시행</p> <p>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· 운영</p>	<p>제9조(지원본부의 사무)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 립 · 시행</p> <p>2.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· 운영</p> <p>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·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문 위치 변경</li> <li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(상위법령 내용 포함)</li> </ul>

현 행 조 례	개 정 조 례 (안)	비 고
<p>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</p> <p>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</p> <p>5.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 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</p> <p>가. 향방작전간 관련된 급식·수송·의료·장비물자 및 전투지원시설</p> <p>1) 수송 : 병력수송용, 무기·탄약 운반용, 급식 지원용</p> <p>2) 급식 : 상황 발생 시 방위협의회 예산 반영/심의, 방위지원본부 급식지원(전환급식지원 포함) : 작전목적상 타 지역으로 전환되어 임무수행 시 해당 지역 방위지원본부에서 급식지원)</p> <p>3) 장비 및 물자 : 소요량을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</p> <p>4) 급수 : 방위지원본부 지원 제한 시, 공병대대 정수차량·급수트레일러 등 운영 지원</p> <p>6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</p> <p>7. 향토예비군,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지원 대책</p>	<p>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</p> <p>5.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 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</p> <p>가. 향방작전간 관련된 급식·수송·의료·장비물자 및 전투지원</p> <p>1) 수송 : 병력수송용, 무기·탄약 운반용, 급식 지원용</p> <p>2) 급식 : 상황 발생 시 협의회 예산 반영/심의, 지원본부 급식지원(전환급식지원 포함) : 작전목적상 타 지역으로 전환되어 임무수행 시 해당 지역 지원본부에서 급식지원)</p> <p>3) 장비 및 물자 : 소요량을 지원본부에서 지원</p> <p>4) 급수 : 지원본부 지원 제한 시, 공병대대 정수차량·급수 트레일러 등 운영 지원</p> <p>6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</p> <p>7.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</p> <p>8.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</p>	
<p>제10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되,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</p> <p>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</p>	<p>제8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법 제9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두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되, 지원본부장은 안산시 부시장</p>	<p>○ 조문 위치 변경</p>

현 행 조 례	개 정 조 례 (안)	비 고
<p>되, 실장은 통합방위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.</p> <p>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</p> <p>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</p> <p>⑤ 그 밖에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</p> <p><u>제11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이 된다.</p> <p>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.</p> <p>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, 인력·재정동원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, 의료·구호, 보급·급식, 통신·전산, 홍보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</p> <p>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</p> <p>⑤ 그 밖에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</p> <p><u>제10조 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○ 상위 법령과 일치토록 분야별 지원반 수정 (8개→7개)</p>